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부식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2호)
- 2)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3호)
- 3)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 내용

- 가) 부식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2호)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부식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3호)
-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고령화 복지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경로당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